

○ 임봉규 위원(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제1호 2004. 11. 22)

생산적 복지구축 관련 추진사항

(질 의)

- 소득분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적 정책보다는 자활프로그램 위주로 노동정책과 함께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관련한 생산적 복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 말씀과 같이 소득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급부체제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스스로 일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이 최선일 것입니다.
- 따라서 도에서는 도내 32개 자활후견기관과 광역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 생업자금 융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활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D/B 를 구축 중에 있으며
- 또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의 근로일수가 축소(정부방침) 되어 소득이 월등히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에서 국고보조금 25,401백만원 외에 3,424백만원의 사업비를 도비로 추가 확보하여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 복권기금사업으로 시행되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여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빈곤 극복을 위해 도에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서비스 정책 개선

(질 의)

- 민간부문·시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책임 하에 전문인력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전환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도정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말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회복지분야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복지자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 내년도 상반기 중 도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용역 추진 중인 보건복지 10개년 발전계획에 대한 사전심의 등 검토를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지역사회내 복지수요의 전망,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대책, 인력·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개선

(질 의)

-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태·내용·이용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방안과,
- 보건소장의 중추적인 관리자 기능 강화 대책,
- 프로그램 실행과 관련 예산부족 보다는 현 수준의 장비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통해 민간의료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경쟁을 하기 위한 자체 재원조달방안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공공보건기관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질병치료보다는 일차보건의료 및 예방보건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 지역주민 접근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 쾌적한 보건의료환경 제공을 위한 노후 보건소, 지소, 진료소 신·증축
 - 보건소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일차검사 및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장비보강 등 기능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장은 주민에 대한 대면 서비스 제공기관인 보건기관의 관리자로서
 - 관할 구역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프로그램 우선순위에 대한 실천계획과 목표의 설정, 조직단위의 활동지정과 서비스 제공과정의 조정·통제·감독기능 수행은 물론,
 - 서비스 제공성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집행과정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등 보건기관의 중추적인 관리자의 기능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 질병관리본부에서 전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1년 과정의 관리자 과정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95년 이후 건강증진법·구강보건법·정신보건법·암관리법 등 중앙정부의 각종 법령 제정에 따른 조직 및 업무 확대, 건강증진기금의 구성에 따른 사업예산 증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추진 조직과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사업추진예산 과소보다는 사업추진인력이 부족한 것이 공공보건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보건소장은 관할 지역의 모든 보건사업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주민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해야 할 관리자로서 질병치료 위주의 민간의료기관과의 서비스 경쟁 보다는 예방보건차원의 차별화된 공공보건부문 역할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개선(응급의료)

(질 의)

- 효율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현재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119 응급의료를 복지 정책의 관리체제로 정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응급의료관리 업무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서는 구급차 출동지시,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결정 등 의료적 통제역할을 강화하고,
 - 소방분야(119)에서는 구조·구난, 화재진압 등 재해재난사고예방 및 조치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따라서 보건분야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와 소방분야 응급상황실(119)을 통합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응급의료통합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의 일원화를 기하는 것이 효율적인 제도로 판단되며
- 현재 중앙에서도 통합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

(질 의)

-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가 강행되면 복지행정의 위축과 혼란을 야기할 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이에 따라 시행유예, 시행범위 축소 및 재조정,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정부에서는 2004. 7. 6일 국고보조금 정비계획을 확정하여 533개 국고보조사업 중 14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며, 그중 경기도는 103개 사업, 보건복지국은 67개 사업 821억원이 해당 됩니다
- 지방이양사업의 재원교부를 위하여 분권교부세를 신설하고 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0.83% 상향 조정하였으며 부족재원은 담배소비세 인상분으로 충당할 예정임

니다.

- 또한 분권교부세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에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에서는 법정교부율 인상을 0.83%에서 금년도 수준인 1.02% 이상으로 조정하여 줄 것과 배분방법에 있어서 실질 재정수요를 보정하여 주고
- 특히 교부세 불교부 단체에도 지속적으로 배분됨을 명시하여 줄 것과 20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여 놓고 있으며
- 금년 정기국회에서 '05년 예산 확정 후 12월중 단체별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적 일자리사업 참여 실태

(질 의)

- 보건복지부 사회적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실시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 도 자체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의 근로일수를 주 3일에서 주 5일로 확대하는 한편, 차상위계층까지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총 3,879명의 자활근로사업 실시
 - 집수리, 간병, 청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등 자활근로 5대 중점사업에 88개 사업단 888명이 참가
 - 또한 고령화사회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노인인력지원기관 2개소 운영, 취업알선센터 17개소, 취업지원센터 42개소, 공동작업장 44개소를 운영
 - 지난 10. 7~10. 8일 2일간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공공부문 및 경비·용역 등에 1,803명의 일자리를 제공

-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의 가사활동 지원을 위해 680명의 경기가정도우미를 배치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 관련 문제점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강한 의지는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과정 등 기반마련이 미흡합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자활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의욕 고취 및 전문양성교육을 실시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숙인 쉼터 이용자 지원 관련

(질 의)

- 노숙인 쉼터 에서 지원되는 급식실태에 대하여 노숙인 들이 근로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와 비오는 날, 휴일 등 에는 1일 3식의 식사제공이 필요한데
- 결식아동 급식비 (2,000원/식) 에 비해 노숙인 급식비가(1,200원/식) 낮은데 대한 도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내에는 현재 3개시·군 9개소의 노숙인 쉼터가 있으며 180명의 노숙인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노숙인 쉼터 현황>

- 수원시 : 5개소 104명, 성남시3개소 56명, 안양시 1개소 20명
- 예산지원액 : 810 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지원사항 : 자활근로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주·부식비, 운영비, 의료구호비, 난방비

- 노숙인 쉼터는 일정한 주거없이 상당기간 거리 등에서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사람들을 임시로 수용하는 시설로서
- 1일 2식만 지원되는 것은 이들이 귀가하거나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타 시설로 전원되는 시기까지 근로를 유도하기 위함이며

- 급식지원액도 1식당 1,329원이 지원되어 타 시설 보다는 낮은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

(질 의)

- 장기간 경기침체와 이혼율 증가로 해체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위기가정 지원 대책은?
- 보건복지부의 지침만 의존하지 말고 시·군에 위기가정지원센터를 확대, 강화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최근 카드빚·생활고로 인한 자살, 자녀유기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한 가정해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 SOS상담전화(1688-1004)를 31개 시·군에 설치하여 위기가정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상담을 하고 있으며
 - 2004년도 복권기금으로 생계비 1가정당 70만원으로 2,480가구에 17억3천6백만원과 의료비(검사비, 치료 등 본인부담금 1인당 100만원이내)1,550명에 10억8천5백만원을 시·군에 배정하여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04년 8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위기 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나
- '05년 “건강가정기본법”시행으로 건강가정업무가 신규로 발생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개선, 가정생활교육, 정보제공 등 가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 가정해체 예방 및 사회통합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군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운영실적

(질 의)

- 시·군의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시·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기능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군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시·군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생활보장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
|---|

- 기초생활보장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지명하여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04년도 시·군의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운영실적은 전년도보다 394%가 증가한 213회로 위원회 개최 회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비수급빈곤층 식품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신속한 대상자 선정과 지원을 위해 대부분 서면회의로 개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운영실적>

구분	회의개최 회수			위원 수
	계	서면회의	회의개최	
2003년도	54회	39회	15회	331명
2004년도	213회	194회	19회	338명

- 앞으로 도에서는 생활보장사업 등의 복지시책 수립 시 시·군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전문인력 확보

(질 의)

- 시설종사자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위해서 어떻게 인력 확충을 하였는지와 운영규정을 정립하여 시설 종사자들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경기도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관련 개별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으며
- 시설운영에 따른 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군별 시장·군수가 위촉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서는 시설의 평가는 물론 시설종사자들의 근무환경개선 등으로 직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문지식 연찬 및 타시설의 운영사례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한 분야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사업 및 성과

(질 의)

- 장애인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사회와 경기도가 전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2003~2004년도에 경기도가 장애아동 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과 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장애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을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및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03~'04년도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증진 사업 추진내역>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역	지급인원 및 금액		사업성과
			2003년	2004년 ('04.10.31 현재)	
장애아동 부양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보호자	1인당 매월 5만원	111백만원 (296명)	133백만원 (327명)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 정 도모
장애인 자녀 교육비	소득인정액(차상위 130%) 이 하 1급~3급장애인 중고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고생자녀	학비 (입학금및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143백만원 (293명)	140백만원 (295명)	최소한의 교육 기회 보장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	시설 및 저소득 계가 청각장애 아동 (10세미만)중 수술적격 판정자	1인당 2,500만원 ('03년도 2,200만원)	440백만원 (20명)	18명 450백만원	의료비용 경감 및 장애아동의 청각기능 습득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비 집행률 저조 사유

(질 의)

○ 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의 예산대비 집행률이 '02년도 79%, '03년도 90%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시면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물으셨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671~672p

(답 변)

○ 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은 그 수혜자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장애인으로서 매년도 일정부분의 수혜대상자 변동으로 집행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집행잔액 발생이 사업의 감소나 부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생활안정 지원사업은 법적인 사항으로 요건에 해당되면 지급)

○ 그러나 향후 국고보조금을 내시하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경예산 등을 통한 사업비 조정으로 집행률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바다 농아원 입소 현황 관련

(질 의)

- 에바다농아원 정원은 120명인데 현원은 17명으로, 현원이 적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평택시 에바다농아원은 1970년 12에 설치된 청각·언어 장애인 생활시설로 120명을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었으나
- 청각·언어장애인 특성상 육체노동이 가능하며 또한 장애인 보장구(보청기)발달로 인하여 장애 정도가 감소되는 등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시설입소가 점차로 줄어들어 현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향후, 시설 입소 수요가 많은 정신지체 장애인시설, 요양시설 등의 전환에 대해서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 지원관련

(질 의)

-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인 것 같은데 타 시설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원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주로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 장애인의 질 높은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미신고시설 관리대책

(질 의)

- 신고시설지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및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경기도 차원의 미신고시설 대책수립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
다.

(답 변)

-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을 유도하고 시설환경을 개선, 생활자 복리를 증진하
기 위해서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 법인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
는 반면에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예산부족과 개인소유 시설이라는 이유
로 정부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 금년 하반기부터 복권기금을 투입하여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
고 있으며 향후 지원대책도 복지부에서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4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복권기금 413백만원)
- 기능보강비 10개소 366백만원, 공공요금 14개소 47백만원
- 아시다시피 미신고시설이 경기도에 집중(33%)된 이유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시설수요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며 이를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 또한 복지부에서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을 추진 중으로 관련법 규정 완화 등
시설기준 개정과 지원근거를 마련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이 완료된 이후에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 그때 조례제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 소위원회 구성 문제도 현재 복지부에서 중점시책중의 하나로 선정, 중앙정부의 정
책에 따라 미신고시설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 구성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미신고시설 관리대책

(질 의)

- 신축, 증·개축 위주의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인건비, 운영비의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 조건부신고시설 뿐 아니라 미신고시설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복권기금을 통한 신축이나 증·개축 등의 시설비는 설비의 법정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것이며
- 인건비 등 운영비 분야도 종사자 충원 등 시설기준을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비를 통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추후, 신고시설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조건부 신고시설에 한하여 복권기금과 지방비를 투자하여 양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조건부신고 미필 미신고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행정지도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만약 조건부신고 미필 미신고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지도감독을 받아온 조건부 신고시설이 상대적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되어 향후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또한 미신고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거나 타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 지자체의 행·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복지시설 유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신고시설 관리대책

(질 의)

- 조건부신고기간 만료('05. 7. 31)에 따른 중장기대책 마련과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미신고시설에 대한 대책은 중앙(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미신고시설 양성화 지원방안 추진과 중장기 대책도 중앙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건부신고시설 유예기한('05. 7. 31)내에 신고시설 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모두 지원하여 양성화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복권기금)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도 자체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고시설 전환이 불가능한 시설은 일제 정리하여 불법시설로 인한 인권사각지대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미신고시설 관리대책

(질 의)

- 미신고시설의 증가와 발생원인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미신고 복지시설 증가의 주요 원인은 중·저소득층의 시설수요 증가에 비해 정부 지원 복지시설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핵가족화, 고령화, 장기적 불황에 따른 중·저소득층 증가 등으로 시설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시설은 수급자 위주로 수용하고 있어 이를 흡수할 마땅한 복지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 또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법

정기준을 갖추지 못해 미신고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시설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보며 양성화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신고시설 관리대책

(질 의)

- 미신고시설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으나 정부는 관리도 안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미신고시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정부는 '02년 미신고 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미신고시설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조건부신고제를 시행하여 행정기관에 시설운업을 등록, 행정제도권 안으로 흡수하여 생활자 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건부신고 미필 미신고시설도 수시 현지 점검을 실시, 사고나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미신고시설의 긍정적인 점은 시설수요 급증에 민감히 반응하여 수요를 신속히 흡수하고 있어 부족한 정부의 복지시설 수용을 보완해주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저소득층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 일부 부도덕한 시설장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인하여 생활자 인권문제나 안전사고 위험 등을 항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또한 생활자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어 정부의 정책수행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 집단형태의 수용시설보다 그룹홈 형태의 복지시설이 생활자 인격형성과 보다 가족적 분위기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 미신고시설의 무조건적인 폐쇄는 부적

절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연구와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신고시설 관리대책

(질 의)

- 정부는 2002. 5월 미신고시설 관리대책을 발표했는데 문제점은 무엇인지 물으셨 습니다.

(답 변)

- 2002년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의 요점은
 - 조건부신고제를 실시, 제도권으로 일단 흡수하고
 - 신고시설 전환이 용이토록 시설기준 대폭 완화와 필요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 설기준을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 이후 관계법령을 모두 개정하여 2002년내에 30인미만의 소규모시설에 대한 신고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1 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시설 전환실적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 이는 미신고시설 대부분이 재정여건이 열악, 완화된 시설기준을 갖추기도 어려웠 으며 오랜 기간 동안 미신고시설로 운영해온 타성에 갑자기 행정권안에 들어가는 것을 꺼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 또한 복지부는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한 이후 재원을 마련코자 했으나 소요예산이 과다하여 2004년이 되서야 복권기금을 확보, 유예기간에 임박한 시점에서 지원사 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국정감사시에도 건의드렸습시다만 시설에서는 미신고시설 양성화 시책을 받아들 일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며 보다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양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신고시설 관리대책

(질 의)

- 정부에서는 금년에 로또복권기금 510억원, '05년에 339억원을 확보하여 미신고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서는 본 예산지원이 일과성으로 그치거나 시설보강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계십니다만
- 복권기금의 기능보강사업의 목적은 조건부시설 유예기한('05. 7월말)내에 신고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추진하는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 시설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신고시설 전환 이후에도 운영비 분야를 지원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시설 관리대책

(질 의)

- '05. 7월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전원 조치 및 강제폐쇄 조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자금지원으로 신고시설 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유예기한을 연장토록 복지부에 건의, 시설보강을 지원하여 최대한 양성화시킬 계획입니다
- 다만 신고시설로 전환할 의지가 없거나 토지규제 등으로 사실상 전환이 불가능한 취약시설은 폐쇄조치가 불가피하며, 생활자에 대해서는
 - 수급자는 정부지원시설로 전원조치 하고
 - 비수급자 중 연고가 있는 자는 가정으로 귀화 조치하며
 - 무의탁자는 인근 신고시설로 전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미신고시설 관리대책

(질 의)

-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미신고시설 지원예산을 책정했는지와 경기도 예산도 반영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복지부에서는 내년도에도 미신고시설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을 확보한 상태로써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3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내년초에는 금년도에 지원받지 못한 시설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신고시설 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도에서도 금년과 같이 복권기금사업을 보충하여 시설장 자격취득과 종사자 확충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19억원을 예산에 반영,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 시설장 자격취득 지원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수강료) : 24백만원
 - 시설장 교육기간 중 대체인건비 지원 : 216백만원
 - 종사자 인건비 지원 : 1,080백만원
 - 공공요금 및 화재보험료 : 612백만원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질 의)

-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홍보자료 개발·제공, 전문교육 인증기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전문인력을 훈련하여 자격증을 부여하고 일반소비자인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경기도는 2001-2004 건강검진예방전담기구 설립에 어떤 사업을 하였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경기도에서 설립·운영하는 건강검진예방전담기구는 없으며

- 질병관리본부, 중앙공무원교육원,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등 전문교육인증기관에서 공무원 대상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 의료법에 의한 가정·보건·정신보건 등 전문간호사 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대학병원급 전문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 보건소 방문보건, 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지식 및 기술 등은 도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 자질함양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 도 자체적인 별도의 건강검진예방진담기구 설립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질 의)

- 도내 응급의료지정 병원 수, 지정병원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여부, 2001~2003년 평가결과에 따른 지정취소나 제재를 가한 실적, 양질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인센티브 제공 실적
- 도내 119 구급대원 중 전문 자격증 소지자 및 미소지자 수, 119 구급대원에 대한 2001~2003년 전문교육실적,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등 자격소지자 충원대책이나 대안책,
- 도내 응급의학전문의 적정 수, 도내에서 필요한 총 응급의학 전문의 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도내 응급의료지정병원은 총 55개소로, 권역응급의료센터 2, 지역응급의료센터 16,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7개소이며
-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준수와 적절한 운영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2003년도 평가결과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광명시 소재 광명성애병원, 안양시 소재

안양병원, 메트로 병원이 지정취소 되었고

- 도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2003년도에는 13개소에 14억9천5백만원, 2004년도에는 15개소에 1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 119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충원 등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 도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학 관련 전담 전문의는 55개소에 198명이며
 - 법적 인력기준에 필요한 의사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2개소 12명, 지역응급의료센터 16개소 64명, 지역응급의료기관 37개소 74명 등 총 150명으로
 - 전체 응급의학 관련 전담전문의 수는 48명이 초과되고 있으나 응급의료기관별 과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 역할

(질 의)

- 보건소를 빈곤자들의 진료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왜 이런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와 보건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2004. 9월말 보건소 진료실적은 총 160,895명으로 이중 건강보험 소지자가 61.2%인 98,537명이고, 의료보호대상자가 38.8%인 62,358명으로 나타나 보건소 이용자가 빈곤층이라는 막연한 인식은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보건소의 역할은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 전염병의 예방관리, 모자보건, 정신보건, 방문보건, 의무, 약무 등 16개 항목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재정 관련

(질 의)

- 2003년, 2004년 경기도의 노인복지 예산은 적절한 수준이며 노인인구 비례 적정 예산은 얼마입니까

(답 변)

- 2003년 경기도 노인복지 예산은 87,89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 7,835,440백만원의 1.12% 규모이며, 2004년 예산은 114,77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 7,850,896백만원의 1.46% 규모입니다.
- 적절한 노인복지 예산 규모 및 노인인구 비례 적정예산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으나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 예산의 많은 부분이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에 쓰이고 있어 재가노인을 위한 시책 및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므로 노인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노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질 의)

- 질병이 있는 노인들에게 간호(보호)를 제공하고 병원 밖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건강서비스에 대한 견해와 확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에서는 건강이 나쁘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및 방문보건사업(보건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질병이 있는 50,549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증상·투약 관리 및 교육(상담) 등 간병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 가정봉사원 및 경기가정도우미 1,453명이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 4,602명에게 용변,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노인 보건의료 및 복지 전달체계가 따로 운영되어 의료서비스 수혜에서 누락되는 노인이 많아 『노인 보건·복지 연계센터』를 수원과 의정부에 시범운영하여 가정(방문)간호, 물리치료 등의 보건의료서비스와 무료차량운행, 가사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노인 보건·복지연계사업(수원)

- 대상노인 : 3,948명
- 보건의료서비스(94건), 복지서비스(2,133건)제공

-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노인 보건·복지연계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재가노인 기능회복 훈련시설 현황 및 문제점, 대책

(질 의)

- 도내 재가노인 기능회복 훈련시설이 얼마나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양로시설은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사례(하남시 소재 영락경로원) : 물리치료, 치료 레크리에이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아로마 요법, 수치료, 수지침 교실, 새천년 건강체조, 일상생활훈련, 치매 예방 등
- 대표적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주간보호시설은 도내 전체 3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례

- 안양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작업요법, 운동치료, 음악요법, 원예치료 등
- 광명시보건소 주간보호 : 물리치료, 미술치료, 작업활동, 요리요법, 원예치료

노인전문병원

(질 의)

- 노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전문병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인들을 별도 노인병원에서 장기 치료할 수 있는 노인의료체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용인·여주 2개 병원의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원인과 감소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은 현재 2개소가 건립되어 운영 중이며 2007년까지 동부, 서부, 남부권 각각 2개소와 북부권 3개소 등 총 9개소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용인·여주 노인전문병원의 의료급여환자 입원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은
 - 의약분업 실시이후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인전문병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 도립노인전문병원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로 위탁·운영되고 있어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 강구도 하나도 원인이 되고 있으며
 - 경기침체로 자부담액 월평균 약 55만원의 지불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원포기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위탁기관의 적자발생 원인을 해소하여야 하므로
 - 병원운영의 손익분기점인 병상규모 200병상 이상을 확충토록 하고
 -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등을 급여항목에 포함하고 노인병원의 장기입원을 허용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2007년 시행예정입니다.
 -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환자가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진료비 지원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복지정책과 관련

(질 의)

- 2003, 2004년도에 시행한 예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그 성과는?
- 요보호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결손 가정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 등을 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2003, 2004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답 변)

- 예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 '03년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76회에 4,806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04년도에는 저소득·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영어회화 특기교육 32개 시설 547명과 영어문화원 영어회화 체험학습 100명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아동 예술 특기교육으로(한국무용, 사물놀이 등) 3개 시설에 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금년부터 We Start경기도시범마을(성남시 목련 1단지, 안산시 초지동, 군포시 산본1동)을 선정하여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자치단체, 학교, 보건소, 병원,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보육시설, 사회복지관등이 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12세 이하 아동들에게 복지·교육·보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성과로는 저소득·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 경로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결손가정 아동 중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주거·교육·의료 급여와 함께 월 70,000원씩 부가급여를, 그리고 도 자체 사업으로 학습 재료비, 특별위로비, 교육보호비,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 종교인, 여성지도자 등 후견인을 지정하여 정서적인 안정 도모와 결연사업 추진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모와 신고 의무자인 교사,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실시와 아울러 아동학대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고 아동학대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표어 현수막설치 가두행진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경찰청, 법원,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관 등이 아동학대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앞으로도 예방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